【 해외금융 뉴스: 중국 】

중국보험업협회, 생보사 면책사항 명문화

□ 중국 보험업협회는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보험법에 대비하기 위해 <인보험상품 약관의 일부조항 기술요령 사용 권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10월 이전까지 약관 내용을 수정하도록 각 보험회사에 요청함.

o 상기 규범은 지난 6월 초 중국 보험업협회가 각계 전문가들을 구성해 만든 것으로 새로 시행되는 보험법에 명시된 각종 권리와 의무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함.

o 이 규범에는 보험계약의 성립, 효력발생, 보험금 신청, 급부조항, 계약해지 및 해약절차, 설명고지의무, 연령착오 조항 등 총 14개 항목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회사 및 상품마다 모호한 설명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았던 생명보험회사의 면책 상황을 7가지로 명문화함으로써 보험회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중국 생명보험회사 면책 7개 사항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상해 또는 살해한 경우,
2)	피보험자가 고의로 범죄행위를 하거나 혹은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형사조치에 항거하는 경우,
3)	피보험자가 계약성립 혹은 계약의 효력이 회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단, 피보험자가 자살할 당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피보험자가 스스로 독극물 혹은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자격운전 등을 한 경우,
6)	전쟁, 군사적 충돌, 폭동, 무장반란이 발생한 경우,
7)	핵폭발, 핵방사능, 핵오염의 경우 등

자료 : 중국 보험업협회 관련 보도자료 참조

o 기존에 보험회사 면책 조항이었던 '피보험자가 에이즈 병원균에 감염되거나 에이즈 보균 환자인 경우'는 삭제됨으로써, 에이즈 환자도 보험회사의 배상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문화함.

(중국 보험업협회 홈페이지 · 신화망, 7/9)